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2 선고 2020가단1510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1. B조합

2. C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강보

변론 종결2021. 12. 14.

판결 선고2022. 3.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조합은 14,831,884원, 피고 C조합은 598,6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2. 3.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조합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조합은 14,831,884원, 피고 C조합은 15,602,0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이 사건 2021.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소송 경위

- 1)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88478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22.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2010.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2) 피고 B조합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908호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10. 5. "D은 피고 B조합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D에 2016. 10. 13. 송달되어 2016. 10.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3) 피고 C조합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908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10. 5. "D은 피고 C조합에게 414,9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D에 2016. 10. 11. 송달되어 2016. 10.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 1) 피고들은 D을 상대로 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차전907 양수금 사건과 같은 법원 2016차전9908 양수금 사건의 각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21,949,427원(피고

B조합 81,582,515원, 피고 C조합 40,366,914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4.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원고도 D을 상대로 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8847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4.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E, 의정부지방법원 F 사건이 중복되었는데, 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7. 5. 31. 중복경매신청 채권자로서 '판결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2010.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1.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실제배당할 금액(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112,773,107원에서 G, H을 임금채권자로 보고, G에 대하여 42,011,752원, H에 대하여 70,761,355원이 각 배당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에게는 배당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11.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이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G, H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731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8. 5. 9. 피고들이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G, H이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972) 및 상고(대법원 2020다21193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0. 6. 29. 위 배당표 중 G에 대한 배당액 42,011,752원과 H에 대한 배당액 70,761,355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피고 B조합에 대하여는 75,443,679원으로, 피고 C조합에 대하여는 37,329,428원으로 배당표 경정을 하였다.

라.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1) D은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4481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1. 27. "피고 C조합의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 10. 5.자 2016차전90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80,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피고 B조합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6. 10. 5.자 2016차전90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83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1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1. 8. 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뉘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6. 29. 임금채권자인 G, H에게 배당되었던 배당액이 삭제되고 피고 B조합에 대하여는 75,443,679원으로, 피고 C조합에 대하여는 37,329,428원으로 배당표 경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고 B조합의 D에 대한 채권은 "2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피고 C조합의 D에 대한 채권은 "180,2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2010.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11. 17.을 기준으로 그 채권액을 계산하면, ① 원고의 채권액은 51,449,314원 [=20,000,000원 + 1,958,904원{=20,000,000×715(2008. 7. 22.~2010. 7. 6.)×0.05×1/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9,490,410원{=20,000,000×2691(2010. 7. 7.~2017. 11. 17.)×0.2×1/365}]이고, ② 피고 B조합의 채권액은 32,120,864원[=27,380,000원 + 240,043원{=27,380,000×64(2016. 8. 11.~2016. 10. 13.)×0.05×1/365 + 4,500,821원{=27,380,000×400(2016. 10. 14.~2017. 11. 17.)×0.15×1/365}}이며, ③ 피고 C조합의 채권액은 211,602,604원[=180,287,000원 + 1,531,204원{=180,287,000×62(2016. 8. 11.~2016. 10. 11.)×0.05×1/365 + 29,784,400원{=180,287,000×402(2016. 10. 12.~2017. 11. 17.)×0.15×1/365}}인데 배당요구채권액은 40,366,914원이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일반채권자로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112,773,107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채권액에 따라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 46,814,871(=112,773,107원×51,449,314원/123,937,092원1) ,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② 피고 B조합 : 29,227,486원(=112,773,107×32,120,864원/123,937,092원)

③ 피고 C조합 : 36,730,750원(=112,773,107×40,366,914원/123,937,092원)

4) 따라서 피고 B조합이 46,216,193원(=75,443,679원-29,227,486원), 피고 C조합가 598,678원(=37,329,428원-36,730,750원)을 더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B조합은 그 부당이득액 46,216,19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831,884원, 피고 C조합는 위 부당이득액 598,6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배당표가 경정되어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2020. 6. 29.의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정모

1)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액의 합계 123,937,092원(=원고의 채권액 51,449,314원+피고 B조합의 채권액 32,120,864원+피고 C조합의 배당요구채권액 40,366,914원)